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계약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XXXXX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회사”에게 가상계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업무내용)

이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가상계좌의 사용용도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상계좌의 사용용도

<간단히 기재 요망>

2. 업무의 범위

가. 계좌개설서비스: “은행”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사용할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회사”에 전송하는 업무

나. 입금 및 통지서비스: “회사”의 고객에게 부여한 “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회사”가 지정한 모계좌 (이하 “입금모계좌”라 한다)에 당일중 입금하는 업무 및 입금된 거래내역을 “회사”에 전송하는 업무

다. 조회서비스: “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회사”가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

제 3조(업무처리 및 자금정산시간)

① 업무처리 시간은 24시간/일, 365일/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은행”이 실시하는 마감업무 및 시스템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처리시간으로 간주한다

② 자금정산은 평일기준(휴일포함) 1일2회 실시하며, 정산시간은 <별첨2>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은행”의 시스템사정, 경영정책상의 사유등에 의하여 동 정산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제 4조(계좌의 지정)

① “회사”는 “은행”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모계좌”와 “수수료인출계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구 분	예금과목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모계좌			
수수료인출계좌			

② "입금모계좌" 또는 "수수료인출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내용을 "은행"에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이 전산등록을 마친때 그효력이 발생한다

제 5조(입금업무 처리)

- ①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자원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한정한다.
- ② "은행"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정한 입금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 ③ "은행"은 "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전산망에 의하여 "회사"에 전송 또는 조회 가능하게 지원한다.
- ④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입금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추심 완료된 후에 출금가능하기로 하며, 자기앞수표에 대한 "회사"의 인식 및 처리는 "회사"의 전산시스템 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 ⑤ "은행"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회사"의 해당 입금모계좌 에서 차감하여 정리한후 "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조(입금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입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제 7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은행"과 "회사"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에의 확인사항 중 "은행"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의한 거래 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처리결과에의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내용 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회사"에 별도 통지 한다.

제 8조(거래의 취소)

"은행"이 전산처리한 내역 중 "은행"의 전산시스템 오류, 이중입금이나 오조작 등에 따른 오류에 한하여 "은행"은 "회사"에게 동 거래의 취소 및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수수료)

- ① 수수료의 산정 및 징구기준은 <별첨1>의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한다.
- ②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은행"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며 "회사"가 시행일 전일까지 이의사실을 통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시행일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 업일)에 "회사"의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없이 자동인출한다.

제 10조(효력 및 계약기간)

- ①이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은행”이 “회사”에 대하여 본 금융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감독행정기관의 승인(인,허가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승인이 있는 날부터 발효한다.
- ②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은행”은 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다
- ③제②항의 통지에는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다.
- ④”회사”가 제②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 11조(계약해지)

-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2. “회사”가 금융관계 법규위반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은행”과 “회사”는 각각의 경영정책상의 사유, 관련법령의 제·개정,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전까지 “회사”에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별첨의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에 의한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잔여 수수료를 해지와 동시에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제 12조(전산운용)

이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은행"과 "회사"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 13조(기밀유지)

- ①"은행"과 "회사"는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기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 14조(손해배상책임)

- ①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제 의무위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②고객에 대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의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 15조(신의성실 의무)

“은행”과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제 16조(준용사항)

본 가상계좌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가상계좌 및 입금모계좌(수수료인출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수신거래 기본약관과 당해 입금모계좌(수수료인출계좌)의 거래약관을 준용하며, “은행”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망, 타행환공동망 등)의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17조(기 타)

-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호 합의 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이 계약업무 진행 중에 감독행정 기관(유관기관 포함)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관련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은행”의 사유가 아닌 타행등의 이의제기로 인한 금융공동망 사용불능등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의한 사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 “은행”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8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